



• 문의 : 상생협력지원과 박종학 과장(042-481-1634), 안병철 사무관(4394)

## 「서점업」, 제1호 '생계형 적합업종'으로 지정

- 5년간,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
  - ①용·복합형 서점(서적비중 50% 이하 등)은 적용 예외 ②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은 연 1개씩 허용 ③학습참고서는 36개월 간 판매제한 등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중기부)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「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(위원 15명)」를 개최하고, 「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(이하 '서점업)」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.

이에 대기업 등은 「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(약칭)」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\*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·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\*\*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.

\* 지정기간 : 공고<201910.4(금)>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<2019.10.18.(금) ~ 2024.10.17.(목)>

\*\* (벌칙) 2년 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이하 벌금, (이행강제금) 위반매출의 5% 이내 부과

이와 관련,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△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△전문가·소비자 의견수렴, △대-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, △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.

서점업의 경우, 소상공인이 약 90%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,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, 영업이익,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

\* (소상공인 서점) 평균매출 226.1, 평균 영업이익 21.4, 종사자 평균임금 6.1 백만원

특히,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.

\* (대기업 서점) '15년 63개 → '18년 105개

<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서점 영향(카드데이터 실태조사 실시, '19.7~8월) >

중소 서점	대기업 출점 前	출점後 ~ 18개월	출점 18개월 이후
대기업 점포별 인근(4km) 평균 중소사업체 수	17.85	16.64	14.07
중소사업체 월 평균매출(백만원)	3.1	2.8	2.7

※ 분석대상 기간 : 2014. 1월 ~ 2019. 6월

다만,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, 융·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「산업경쟁력」과 「소비자 후생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,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.

-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·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%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,000m<sup>2</sup>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. (단,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)
- ② 또한,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,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(동일 사군(특별광역시 동일 구) 또는 반경 2km 이내)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.
- ③ 다만,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,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.
-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(1개사)의 경우,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.

중기부 관계자는 “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”면서, “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·판매,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[붙임]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안병철 사무관(☎ 042-481-4394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「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(표준산업분류: 47611)」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·고시한다.

1. 지정 기간 : 2019. 10. 18.(금) ~ 2024. 10. 17.(목), 5년간

## 2. 업종·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

「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」 : 매장,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(도서) 등 인쇄·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

※ 타 업종과 융·복합되어 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, 해당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%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,000㎡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. 단,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업종범위에 포함한다.

## 3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

○ 대기업등(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)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「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」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.

1) 인수 :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·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\*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.

2) 개시 :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3) 확장 :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.

※ 인수·개사·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」에 따른다.

#### 4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

-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(2019.10.18.)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신규 출점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다.
  - 가맹점,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.
  -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·군(특별시·광역시는 동일 구)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(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·후 6개월 이내)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.
  - 이전출점하는 경우, 기존 사업장 면적의 10% 이내에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.
  - 전문 중견기업은 사업장의 신규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, 사업장 수의 제한 없이 신규출점 할 수 있다.

#### 5.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

- 지정일(2019.10.18.) 이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(관련 상생협약 포함)에 따라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,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.